

산림탄소상쇄 사업유형 (운영표준 제4조 관련)

1. 신규조림/재조림 사업

신규조림/재조림이란 산림이 아닌 지역에 인위적인 식재·파종 및 천연갱신 유도를 통해 산림을 조성하는 활동을 말한다.

신규조림은 최소한 과거 50년 동안 산림이 아니었던 토지에 산림을 조성하는 활동이며, 재조림은 본래 산림이었으나 1989년 12월 31일 이전에 다른 용도로 전용되어 현재까지 산림이 아닌 토지에 산림을 조성하는 활동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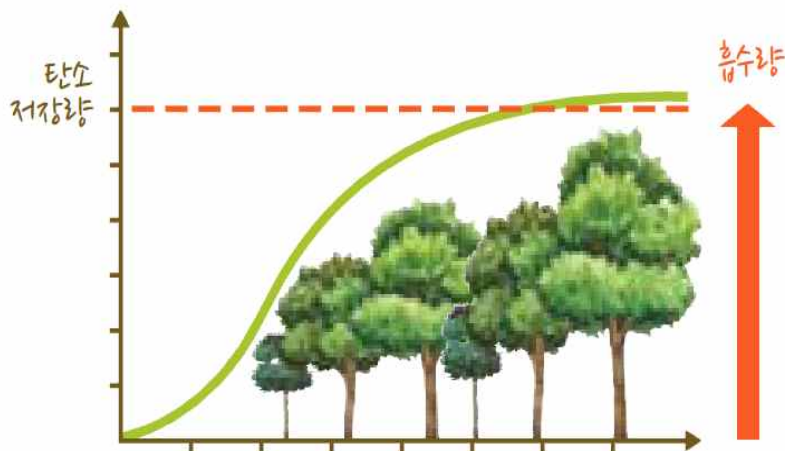


그림 1. 신규조림/재조림 사업을 통한 탄소흡수량 증대

2. 산림경영 사업

산림경영 사업이란 산림을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경영함으로써 산림의 건강성을 유지하고, 왕성한 성장을 유도하여 산림의 탄소흡수량을 증대시키는 사업을 말한다.

산림경영 사업은 생장이 우수한 수종으로 산림을 갱신하거나, 벌기령을 연장하거나, 택벌림 경영을 시행하는 등 경영방식 및 시업체계를 개선함으로써 탄소흡수량을 증대시키는 사업이다. 기본적으로 산림인증을 획득한 산

림이나 산림경영계획이 작성되어있는 산림을 대상으로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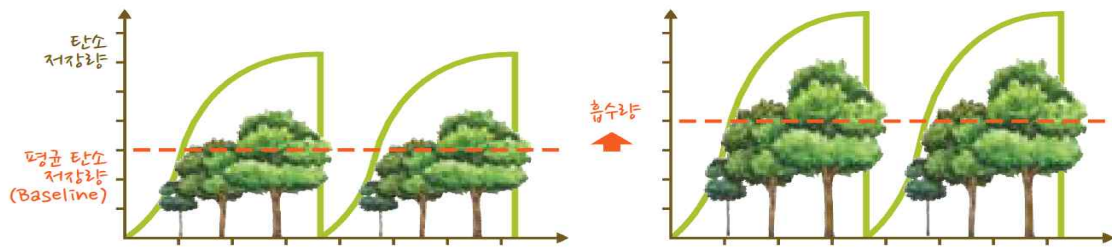


그림 2. 산림갱신을 통한 탄소흡수량 증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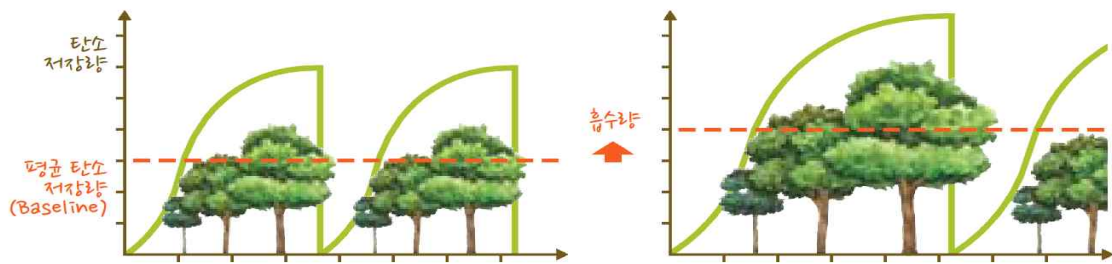


그림 3. 벌기령 연장을 통한 탄소흡수량 증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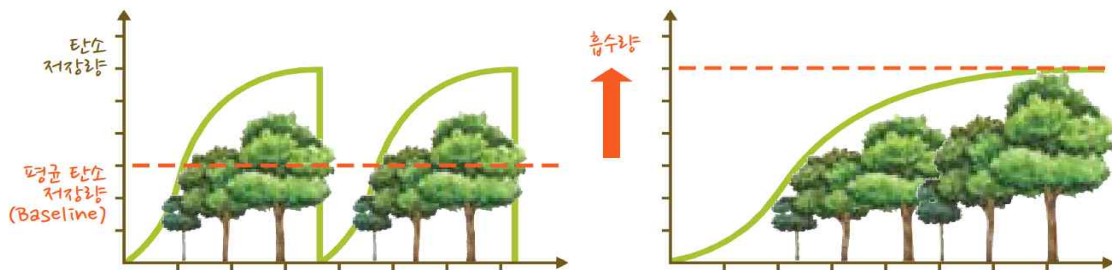


그림 4. 택벌림 경영을 통한 탄소흡수량 증대

3. 식생복구 사업

식생복구 사업은 최소 0.05ha 이상의 토지에 식생조성을 통해 탄소축적을 늘리는 인위적 활동으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 2조에 따른 도시숲, 생활숲, 가로수를 조성하는 사업을 말한다.

4. 목제품 이용 사업

목제품 이용 사업이란 숲가꾸기와 간벌 및 주벌 등의 산림경영활동을 통해 수확된 원목이나 이를 가공하여 생산된 목제품을 이용하는 사업을 말한다. 목제품 이용 사업 참여자는 국내 산림으로부터 합법적인 절차에 의해서 수확된 목재를 이용하여 만든 목제품을 구입 또는 사용하는 최종

소비자로 한다.



그림 5. 목제품 이용을 통한 탄소흡수량 증대

5. 산림바이오매스 에너지 이용 사업

산림바이오매스 에너지 이용 사업이란 기존에 사용하던 화석연료의 일부 혹은 전부를 산림바이오매스 에너지(목재펠릿, 목재칩 등)로 대체함으로써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는 사업을 말한다. 산림바이오매스 에너지 이용 사업 참여자는 최종적으로 산림바이오매스 에너지를 사용하여 온실가스 배출량을 저감한 자를 대상으로 한다.

6. 산지전용 억제 사업

산지전용 억제 사업이란 산지관리법 제14조의 산지전용 허가 시 부여받은 산림존치 또는 녹지 조성 면적 이상으로 산림을 존치하거나 녹지를 조성하는 사업을 말한다.

7. 복합형 사업

복합형 사업이란 신규조림/재조림, 산림경영 등으로 발생한 임목 부산물을 이용하여 산림바이오매스 에너지로 활용하는 사업 또는 신규조림/재조림, 산림경영 등으로 수확한 임목을 이용하여 생산한 목제품을 활용하는 사업을 말한다.

복합형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각 단위사업(신규조림/재조림,

산림경영, 목제품 이용, 산림바이오매스에너지 이용)에 대한 운영표준을 고려하여 사업을 추진한다.

8. 산불피해지 조림사업

산불피해지 조림사업이란 산림 등이 인위적 또는 자연적으로 불에 탄 산불피해지에 실시하는 조림사업을 말한다.